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2008년 12월1일부터 시행]

### 1. 주요내용

- 가)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①항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 나) 제14조 (착공신고등) ①항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 가. 구조계산서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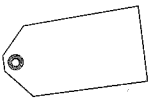
인 경우만 해당한다)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흠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개정 내용 요약

- 가) 건축허가시 : 구조도 제출
- 나) 착공시 : 구조계산서 제출
- 다)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6조 1항 2, 14조 1항 2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적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분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건축 허가 신청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착공 신고 신청



##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요소·배점범위 및 점수계산방법

은[별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설계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별 세부사항·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9.1.10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공공건축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1. 평가방법

-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중에서 선택하되,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으로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평가에 의한다.
- 나.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한다.

### 2. 수탁기관의 확인

참여건축사 및 기술자의 보유현황과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하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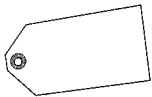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 4. 가점기준

평가요소	점 수 계 산 방 법
(1) 해외설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설계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1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다만, 참여기술자는 0.5점 범위 내에서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설계업체가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0.5점 부여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비 10억원이상 : 100%</li> <li>• 용역비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 80%</li> <li>• 용역비 2억원이상 ~ 5억원미만 : 60%</li> <li>• 용역비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 40%</li> <li>• 용역비 5천만원미만 : 20%</li> </ul> </li> <li>- 참여기술자가 해외용역에 참여한 경우, 1인당 0.1점씩 가점</li> </ul> </li> <li>※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는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li> </ul>
(2) 공동도급설계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0.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비 30억원이상 : 0.5점</li> <li>• 용역비 2억원이상 ~ 30억원미만 : 0.3점</li> </ul> </li> </ul>
(3) 전차용역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업자의 전차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가점하되 0.8점을 초과할 수 없다.</li> <li>- 참여기술자의 전차용역수행정도(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간)에 따라 가점하되 0.7점을 초과할 수 없다.</li> </ul>
(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 안에서 가점</li> </ul>

5. 감점기준

평가요소	점수 계산 방법
(1) 부실벌점	-참여건축사·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건축사·참여건설기술자 및 참여업체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2) 집행계획 공고위배	-집행계획공고내용 및 설계지침서 위배 등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1점의 범위내에서 감점
(3) 필요이상 과도한 도면등의 제출	-컴퓨터그래픽, 모형, 투시도의 재료·색상 등이 심의에 공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0.5점의 범위내에서 감점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재료의 종류·색상(도) 수를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참여 건축사사무소에게 관계도면의 제출을 금지토록 제한 할 수 없음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71호 2009.1.2]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의 “기술수준 : 국내의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를 “기술의 우수성 : 국내의 동종기술과 비교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제4조제5항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7항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이해관계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평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기술수준”을 “기술의 우수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신설한다.

2.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

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여부” 및 그 “연장기간”을 의결한다.”를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의결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등급과 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호기간 연장도 불인정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산정한 후 당해 신기술과 관련하여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경감하되, 경감되는 기간의 합이 위에서 정한 연장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명령 건당 6월씩 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부과 건당 1년씩 경감
3.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벌금 이상의 처벌 건당 1년 6월씩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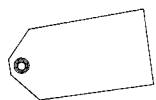
제16조제2항 중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을 “등급 및 보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불인정”을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의”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을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부정행위의”를 “부정 및 부당행위의”로 하고, 제1항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을 신설한다.



## 주차장법 일부개정 [공포번호 제9341호 2009. 1. 7]

### ◇ 개정이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6조제2항 신설)

- 1)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

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함.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3) 이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법 제12조의3제2항)

- 1) 단지조성사업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불편을 초래함.
- 2)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 폐지(현행 제23조제1항 삭제)

-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주차장의 설치·관리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한 간섭일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을 무시한 행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을 폐지함.
- 3) 이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불필요한 감독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번호 제93호 2009. 1.2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을 추가하는 등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 ◇ 개정문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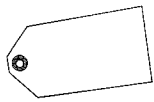
- 1) 교통기사
- 2) 토목·건축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기술사·기능사 또는 기사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통틀어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7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업체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교통체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축법」 일부개정안 공포(2009.2.5)

###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

- 국토해양부는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며,
- 공사시공자의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등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는 개정안을 2월 6일(금) 공포하였다.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제화 필요
    - 구체적인 인증기준,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
    -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동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경미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됨.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 등의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로 건축주 및 건축관계자 등의 불만 및 적발(행정청)과 제재기관(검.경)의 분리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 유발
    -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 준수기반을 마련하고,
    - 경미한 위반 행위를 과태료로 제재하게 됨에 따라 현재 벌금

부과로써 국민이 전과자로 전락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건축법」 세부 개정내용

##### 1. 조문별 설명자료

###### ①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안 제14조)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함

- 현행 규정상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 등 범위와 관계없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규정

-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을 신고로 처리

###### ②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시행(안 제66조의2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

-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확대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통해 고유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 가능

- 그간 지침(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2001-100호, '01.8.29))으로 운영중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③ 행정형벌의 합리적 조정(안 제111조 및 제113조)

- 벌금 → 과태료(200만원 이하)

-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공사현장에 건축허가 표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법규신설 및 개정

○ 행정절차상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해 과도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를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 2. 예상 질의응답

1) 대수선의 범위를 변경하는 취지

□ 현행 규정상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 등 범위와 관계없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규정

○ 건축허가 대상인 대수선을 건축신고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대수선의 내용에 따라 허가 및 신고대상을 구분함이 바람직

□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화 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건축행정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함.

○ 건축 신고대상을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가벼운 대수선으로 변경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무엇인지?

□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

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1~3등급)하고, 건축비 일정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임.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2001-100호, '01.8.29)으로 운영중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과 같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성능적 가치와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토록 하고,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3. 행정형벌을 합리화하는 취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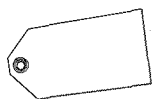
□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건축허가 표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에 따라 전과자로 전락하고 불만도 팽배

○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벌금 → 과태료 전환 대상

-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공사현장에 건축허가 표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30호, 2009. 1.20]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1. 구조안전성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평가,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가 중 치
구조안전성	0.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15